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6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8월 10일

발 의 자 : 김창원 의원(1명)

찬 성 자 : 권수정,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상진,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양민규,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황인구 의원(25명)

##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6.9)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다양한 활동실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나.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재난본부장이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본문 중 “총리령”을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7조의 조제목 “성과중심의 보상”을 “성과중심의 포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의 항 번호를 각각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u>총리령</u>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기록부에 개인별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15조(교육 및 훈련) ① ----- -----<u>법 시행규칙</u>-----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성과중심의 보상)</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p> <p>① 본부장 또는 서장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①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보상 또는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 (현행과 같음) ----- -----</p>
<p>② 시장 또는 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③ ----- ----- (현행과 같음) ----- ----- -----</p>
<p>③ 시장 또는 서장은 의용소방대원</p>	<p>④ -----</p>

<p>의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견학, 소방기술경연대회 또 는 체육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 (현행과 같음) ----- ----- -----</p>
---	---

문서번호	2021072300000004
------	------------------

##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김창원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박주용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7.23	
회신일 : 2021.08.04	내용문의 : 02-2180-7954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성과중심의 포상 등)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675,000천원(연평균 135,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35,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개발비용은 2022년 발생하고, 2023년부터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
  - 물가상승률 미반영

2)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675,000천원(연평균 135,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시스템 (안 제17조제1항)	개발		450,000	-	-	-	-	450,000
		유지·보수		-	56,250	56,250	56,250	56,250	225,000
	소계(b)		450,000	56,250	56,250	56,250	56,250	675,000	
□ 총 비용(b-a)			450,000	56,250	56,250	56,250	56,250	675,000	

-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 시스템 = 675,000천원
  - = 개발비용+유지·보수비용
  - = 450,000천원+225,000천원

- 개발비용 = 450,000천원
  - = 의용소방대 모바일앱 개발+의용소방대원 관리 프로그램
  - = 200,000천원+250,000천원

※ 개발비용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개발비용 산출내역 적용

구분	개발내역
의용소방대 모바일앱 개발 (2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설정 확인, 생체인증 및 활동 증빙 사진 전송 기능</li> <li>- 소방출동(활동)기록부 내용작성 및 서명 기능, 출력 가능</li> <li>- 출동/훈련/홍보/봉사/순찰 등 항목별 활동 기록</li> <li>- 각종 재난 알림 및 공지사항 전파</li> <li>- 수당 신청 및 지급 내역 조회</li> <li>- 의용소방대원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조회</li> <li>- 모바일 교육 콘텐츠 제공</li> </ul>
의용소방대원 관리 프로그램 (25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용소방대원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관리</li> <li>- 활동 수당 지급 및 관리</li> <li>- 의용소방대원 각종 신청서 발급</li> <li>- 대원별 활동 내역 및 성과 관리</li> <li>- 장학금 및 표창, 후생 복지 지원 내역 관리</li> <li>- 의용소방대 활동 및 지원 사항 통계 관리</li> </ul>

- 유지·보수비용 = 225,000천원
  - = 연간 유지·보수비용×4년
  - = 56,250천원×4년

※ 연간 유지·보수비용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1.6)」에 따른 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의 중간값인 12.5%를 적용(450,000천원×12.5%=56,250천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예 산 분 석 관      박주용  
                          ☎ 02-2180-7954  
                          e-mail : pjooyong@seoul.go.kr